

부속기관

도서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 및 학술 연구 자료 일체를 보존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이용을 위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제2조 (문헌의 정의) 문헌이라 함은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장서 종별) 학교 도서관의 장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자료
2. 참고 자료
3. 정기 간행물
4. 학위 논문
5. 지정 자료
6. 귀중 자료
7. 보관 자료
8. 비도서 자료

제2장 수서

제4조 (수서 종별) 학교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

1. 구입 자료
2. 수증 자료
3. 편입 자료
4. 교환 자료

제5조 (구입 자료) 학교 도서관의 자료 구입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입한다.

1. 일반 자료
2. 전문 자료
3. 지정 자료
4. 희망 자료
5. 교양 자료

6. 과제물 자료
7. 정기 간행물
8. 비도서 자료

제6조 (수증 자료) 수증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수증 자료는 그 기증자를 기입하여 보관한다.
2. 수증 자료로써 필요에 따라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3. 수증 자료 중 학교 도서관 자료에 적당치 아니한 것은 자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3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7조 (열람 시간) ① 열람 시간은 계절, 요일, 및 열람실에 따라서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교는 필요에 따라 열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휴관일) ① 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 공휴일
2. 개교 기념일
3. 장서 점검 기간

② 일반 열람실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휴관하지 아니한다. 단, 주일과 성탄절, 구정 당일은 휴관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 또는 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열람 자격) ① 학교의 교직원

② 학교의 학생(청강생, 위탁 연구생 포함)

③ 학교를 졸업한 교역자 및 연고자로서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④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⑤ 외부인 : 전항 이외의 이용자(학교 졸업생 포함)는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1. 타 대학 학생 : 해당 학교의 도서관에서 발행한 타 대학 도서관 열람 의뢰서
2. 외부인 :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장 추천서

제10조 (대출 자격) ① 열람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권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임 교수 이상 : 3개 월간, 30권
2. 직원 및 강사 : 2주 일간, 10권
3. 재학생 : 2주 일간, 5권
7. 겸임 교원, 초빙 교수 : 2개 월간, 15권
8. 사회교육원 : 1-4 강좌 수강생; 1주 일간, 2권
5 강좌 수강생; 1주 일간, 5권

② 연장 : 자료의 대출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며, 예약된 자료의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다.

③ 학적이 없는 교수의 개인 조교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한해 특별 열람증 자격으로 도서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간강사의 경우 도서관 이용을 수업 해당 학기만으로 제한한다.

제11조 (희망 도서) 희망 도서 신청은 1년에 학생은 5권, 교직원은 10권 이내로 제한을 한다.

제12조 (졸업 예정자) ①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사정회의 1주일 전부터 대출을 불가하며, 졸업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대출 도서를 반납해야만 한다.

② 만약 미납 도서가 있을 경우 도서관은 졸업 사정회의에 명단을 제출하여 졸업을 보류시킬 수 있으며, 교무과 또는 총무과에 각종 증명서의 발급 보류를 요청하고, 졸업장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학교 부속 기관 소속 학생들도 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와 졸업 증서 또는 수료증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 (교회, 기관 대출) 교계의 학술 단체 및 교회 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장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관외 대출 제한) 다음 도서관 자료는 관외 대출을 금한다. 다만 비도서 자료를 수업에 이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1. 참고 자료
2. 정기 간행물
3. 학위 논문
4. 지정 자료
5. 교수 저작 자료
6. 귀중 자료
7. 도서관장이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자료
8. 비도서 자료

제15조 (자료의 복제 및 저작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기타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부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단, 도서관 및 이용자들은 현행 저작권법 제 2조에 의해 아날로그 복제와 디지털 복제로 구분된 복제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 복제 :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도서 등의 아날로그 형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조사, 연구 목적이어야 하고, 당해 도서 등의 일부분에 한하며 1인 1부만을 복제할 것을 전제로 저작 재산권을 제한한다. 이용자 또한 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디지털 복제 : 비도서 자료인 CD 및 DVD는 반드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재생하여야 하고 복사 및 다운로드할 수 없다. 이용자 또한 이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 반납) 대출된 자료는 반납 기한 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도서관장은 필요에 의하여 기한 전일지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연체 자료) 대출 도서의 반납기한 내에 문헌을 반납하지 않을 때는 해당 자료의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기간 × 연체 권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 및 갱신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제18조 (연체 자료에 대한 제재) ① 연체 기간 동안에 도서관은 교무과 또는 총무과에 제 증명서의 발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연체자가 도서관이 정한 일정 기간 중 선택적으로 도서관에서 근로 봉사 시 그에 따른 대출 제한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제19조 (분실 자료) 도서를 대출하여 분실하였을 경우 같은 내용의 새 책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만약 도서를 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자료의 Page수 × 현복사비 × 2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때 연체 기간에 대한 대출 중지 등의 제재는 별도로 실시된다. 단, 자료의 분실 신고를 할 시에는 분실 신고 처리 후 재구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

제20조 (제재) ① 반납 연체 3회 이상의 경우 해당 학기의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무단 반출한 자는 1차 적발 시 경위서 작성하고 0-3개월 도서관 이용 정지하고, 2차 적발 이상 시 학생 지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학생증 대여는 양측 모두 1회 적발 시 경위서 작성과 1개월 도서관 이용 중지, 2회는 도서관 3개월 이용 중지, 3회는 학생 지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타인 학생증 도용 및 전대 시에는 학생 지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기타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장 특별 열람증에 관한 내규

제2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를 졸업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학문 연구,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편의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평생회원이 되므로 학교와의 유대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학교 졸업생에 한하며, 구 학칙에 의거 졸업한 비정규생도 포함한다.

② 회원이 도서관 열람 및 대출을 원할 시는 특별 열람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는 평생회원 가입비 30,000원 및 학교 발전 기금(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학 중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특별 열람증 발급을 제한한다.

제23조 (구비 서류) 특별 열람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사진 2매 (3cm x 4cm)
3. 졸업 증명서 1부

제24조 (이용 방법) 자료 및 시설이용 규정에 준한다.

제25조 (대출 자료 및 특별 열람증의 분실) 특별 열람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분실 신고 이전에 대출된 자료는 회원이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이용의 제한) 특별 대출증 발급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재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료 이용 자격을 박탈한다. 단, 재발급 시 이용기간은 재발급 일 부터 1년으로 한다.

제27조 (회원 자격의 박탈) 특별 열람증을 발급받은 회원 중 아래에 준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1. 학교의 행정 질서를 위해한 자
2. 교단의 신학 사상에 위배되어 퇴출된 자
3. 특별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제28조 (연회비 및 가입비의 처리) ① 연회비와 가입비는 특별 열람증 발급 시부터는 반환되지 않는다.

② 연회비는 도서 구입비로, 가입비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처리한다.

제29조 (준용 규칙) 기타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도서관내 열람 규정에 준용한다.

제5장 자료 점검 및 제적

제30조 (자료 점검)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료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 발견된 손실, 망실의 자료는 도서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이를 처리한다.

제31조 (자료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수시로 도서관장이 도서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대출로 인해 오손된 것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자료
2. 이용자의 분실로 인한 것 중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
3. 장서 점검한 후 연속 3회 이상 미확인된 자료는 제적하되, 전체 장서량의 0.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0.5%를 초과할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32조 (자료 제적 절차) 제적 자료를 제적부에 기록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제적이 완료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출판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학술 연구 및 저술의 출판을 통해 한국 교회의 정통 신학 사상을 보수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여 학술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학교 부속기관으로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라 하고 학교 내에 둔다.

제3조 (업무) 출판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출판과 판매
2. 기독교 학술 도서의 출판과 판매
3. 학술지의 간행과 보급
4. 기타

제4조 (조직) 출판부의 대표는 총장으로 한다. 대표는 학교 교직원 중에서 출판부장을 임명하여 출판부 사업을 총괄하게 한다. 출판부장과 출판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직원) 출판부 실무 책임자는 출판 전문직으로 간주하여 신규 채용, 전입, 전출 시에는 출판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6조 (출판 위원회) ① 출판부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며 교직원 중에서 3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출판부 판매 대행사의 책임자를 읍저버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③ 위원장은 출판부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 사항) 출판부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부 운영 방침
2. 출판부의 예, 결산 심의
3. 출판 도서의 선정
4. 부대사업의 심의

제8조 (재정) 출판부의 재정은 교비로 한다.

제9조 (회계 및 사업 계획) ① 출판부의 회계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출판부의 사업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10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출판부장의 제청으로 출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회교육원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입각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교육자의 자질 향상 및 지도력과 봉사 정신을 개발함으로써 성숙한 시민 정신의 함양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성취하여 한국 교회와 지역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본원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칭하고 학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381-1) 안에 둔다.

제3조 (교육 과정) 교육원에는 전문인 양성 과정, 교회 지도자 과정, 목회자 단기 교육 과정, 평신도 훈련 과정, 목회 전문 과정, 성인 교육, 비정규교육, 계속 교육, 위탁 교육, 연구 교육, 학점 은행제, 전문 교육 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둔다.

제4조 (모집 인원) 교육원의 모집 인원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수업 방법) 수업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주간 수업, 야간 수업, 계절 수업, 방송 통신 수업 및 Internet Cyber 수업 등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6조 (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3명 내외 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이 위원회장이 된다.

④ 위원회 안에 실행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학과 수료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수강생 활동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9조 (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10조 (행정) 교육원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장 학사 운영

제11조 (수강생 등록 시기) 교육원의 수강등록 시기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개강일을 중심으로 4주일 전 이후로 하며, 상황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 자격) 교육원의 입학과 수강 대상은 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학점 은행제 학사 학위 과정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이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며, 위탁 교육 과정인 목회 전문 과정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수강 원서 제출) 교육원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수강생 선발) 교육원의 수강생 선발은 각 과정별로 수강 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 (교과 과정)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과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둔다.

1. 성경 연구 과정
2. 전문인 양성 과정 : 기독교 사회 복지 전문 과정, 기독교 상담 및 목회 특수 상담 전문 과정, 청소년 지도자 전문 과정, 교회 음악 지도자 과정, 주일학교 교사 및 지도자 과정
3. 교회 여성 지도자 과정 : 사모과정, 여교역자과정
4. 목회자 단기 교육과정 : 강해설교 세미나, 예배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5. 평신도 훈련 과정 : 소그룹 지도자 과정, 어린이 사역 과정, 전도 훈련 과정, 찬양 인도 훈련 과정
6. 목회 전문 과정
7.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과정
8. 어학 과정
9. 기타

제16조 (등록금) ① 교육원의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등록금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 원장의 재가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

③ 단, 농어촌 지역(군 단위 이하) 목회자와 사모, 여교역자 및 학교의 재학생

배우자, 교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수업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수업 연한) 교육원의 수업 연한은 각 과정에 따라 계절학기, 한 학기, 1년, 2년 등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수업 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학점의 배정 및 인정) 각 교육 과정별로 교과목 학점의 배정 및 인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성적 평가) 각 교과목의 성적은 수강생들의 수업참여도, 학업 성취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20조 (수료증서 수여) ① 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소정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②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22조 (수입원) 교육원의 재정은 수강생의 등록금,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교육원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시행 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어학원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국제어학원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입각해 외국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교육자의 자질 향상 및 지도력과 봉사 정신을 개발함으로써 성숙한 세계시민 정신의 함양과 동시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명칭 및 위치)** 본원은 국제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 칭하고 학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381-1) 내에 둔다.
- 제3조 (교육과정)** 어학원에는 한국어 과정, 히브리어 과정, 헬라어 과정, 라틴어 과정, 영어 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둔다.
- 제4조 (모집 인원)** 어학원의 모집 인원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 (수업 방법)** 수업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년 4분기로 진행하며 주간 수업, 야간 수업, 계절 수업 및 Internet Cyber 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 제6조 (어학원 위원회)** 어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어학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장이 된다.
- ④ 위원회 안에 실행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학과 수료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수강생 활동에 관한 사항
 6.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9조 (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10조 (행정) 어학원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학사 운영

제11조 (수강 자격) 어학원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 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이다.

제12조 (수강 원서 제출) 어학원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수강생 선발) 어학원의 수강생 선발은 각 과정별로 수강 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금) ① 어학원의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등록금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 원장의 재가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학점의 배정 및 인정) 각 교육과정별로 교과목 학점의 배정 및 인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성적 평가) 각 교과목의 성적은 수강생들의 수업 참여도, 학업 성취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제17조 (수료증서 수여) ① 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하고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8조 (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원) 어학원의 재정은 수강생의 등록금,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 연도) 어학원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시행 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수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아카데미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아카데미 연구소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입각해 학교 재학생들과 기타 목회자들의 연장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교육자의 자질을 향상 개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과 소속) 연구소는 아카데미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학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381-1) 내에 둔다.

제3조 (사업 내용) ① 학기와 방학 중 신학 및 학술 강좌를 개설한다.

② 성경 특강과 세미나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성경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만든다.

④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 지리, 역사 등에 대한 연구와 현장 학습(성지 순례)을 진행한다.

⑤ 교회사에 있었던 중요 현장 연구, 답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⑥ 성지의 현장 및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⑦ 기타

제2장 조직

제6조 (소장) ① 소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을 책임진다. 소장의 유고 시 총장은 연구소의 정규 연구원에게 소장직을 위임한다.

제7조 (운영 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카데미 연구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안에 실행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회의는 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3장 재정

제22조 (수입원) 연구소의 재정은 수강생의 등록금,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시행 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수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